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4-18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년 4월 25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1. 제안이유

현재 경로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및 양곡비 등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나, 대다수 경로당은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매일 점심식사를 운영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. 이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‘주5일 점심식사’를 제공하고자, 주·부식 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, 인건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, 노인 결식 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내 돌봄 강화와 노인복지를 실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목적의 근거를 명확히 함 (안 제1조)
- 나. 경로당 주·부식비, 인건비 및 취사용 연료비 등 지원 사업을 확대 함 (안 제7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(노량진동 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6, FAX : 820-1474, E-mail : fati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노인복지법」 제47조”를 “「노인복지법」 제4조 및 제47조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주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주·부식비, 인건비 및 취사용 연료비 등 지원 사업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생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노인복지법

[시행 2024. 4. 3.] [법률 제19887호, 2024. 1. 2., 일부개정]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
<개정 2007. 8. 3.>

1. 노인복지관 :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·재가복지,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2. 경로당 :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·취미활동·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3. 노인교실 :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·노인건강유지·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4. 삭제 <2011. 6. 7.>

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

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(「양곡관리법」에 따른 정부관리 양곡을 포함한다)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11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

관계 법령

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2. 2. 1.]

제47조(비용의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노인복지법 시행령

[시행 2023. 12. 14.] [대통령령 제33901호, 2023. 12. 5., 일부개정]

제24조(비용의 보조)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4. 7. 30., 2007. 12. 13., 2011. 12. 8., 2017. 9. 5.>

1.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
2. 법 제34조제1항제1호·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·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3.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
4.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
5.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
6.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2005. 12. 27., 2011. 10. 26.>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12. 27., 2012. 8. 3.>